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3194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6039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31945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소1599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20. 7. 15.

판결 선고 2020. 8. 1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소159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제증명, 교통비, 등·초본, 원인증서, 말소, 세대열람 명목으로 지급한 돈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원인증서, 말소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4.경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6,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법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말소 및 C의 근저당권설정 업무(이하 '이 사건 등기업무'라 한다)를 위임받아 이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4. 1,386,15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료등 272,700원, 등·교육세 593,280원, 증지대 13,000원, 제증명 25,000원, 채권 222,300원, 교통비 50,000원, 등·초본 12,600원, 원인증서 30,000원, 등록세발급 30,000원, 말소 70,000원, 세대열람 40,000원, 합계 1,386,15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C 신도림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등기업무와 관련된 계약이 직접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제증명 25,000원, 세대열람 40,000원 부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없거나 관련법령상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교통비 50,000원은 당시 버스나 지하철 요금 및 이 사건 등기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내역 등을 고려하면 34,850원이 과다청구된 것이며, 등·초본 발급비 12,600원 중 1부 발급비에 해당하는 3,000원을 초과한 9,600원은 과다청구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09,45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등기업무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로 인해 법무사 보수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소장 및 2019. 10. 21.자 준비서면에서 C 신도림지점에서 근무하는 대출담당직원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C 측에 법무사보수금을 청구하였으며, D이 원고의 대출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후 영수증만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갑 제27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관련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무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과의 약정에 따라 C에게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등기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을 통하여 또는 직접 이 사건 등기업무 위임과 관련된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직접 피고와 이 사건 등기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C이 피고와 이 사건 등기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하였던 점, ②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등기업무 관련 계약에서 인정된 업무의 범위, 비용 책정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다만 C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등기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등기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닌 업무(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확인1)

등)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비용 명목 업무 중 일부만 수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⑤ 피고가 버스나 지하철만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불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등기업무 관련 계약 상 제증명료, 교통비, 등·초본 발급비, 세대열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증명료, 교통비, 등·초본 발급비, 세대열람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백정현

판사권형관

판사권비룡

1) 원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C이 피고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법무사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C의 권한을 법무사가 대리 대행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